

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·요금 ☐ 신고서 ☐ 변경신고서				처리기간 7 일
신청인	① 성명(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	② 생년월일	
	③ 주 소		④ 전 화 번 호	
⑤ 사 업 의 종 류			⑥ 운 행 형 태	
⑦ 사 업 구 역				
⑧ 신고 또는 변경하려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와 금액 및 적용방법				
⑨ 변 경 사 유				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·도지사 귀하				
첨부서류	1. 운임·요금표 및 그 신·구 대비표(신·구 대비표는 운임·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1부 2.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[경형, 소형, 중형, 대형(승용자 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에만 첨부합니다] 1부 3. 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			수수료 1,000원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 쪽)

